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5. 8. 1.> (앞 쪽)

실시계획 승인신청서	처리기간 120일(경유기관 30일, 협의기관 30일 포함)
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	
	생 년 월 일 (법 인 등 록 번 호)		전화번호	
	주 소			

신 청 내 용

사 업 명 칭								
사 업 목 적								
위 치			사업면적	㎡				
시 행 방 법			사업기간	. . .~ . . .				
토지이용 현황 (㎡)	지목별							
	면 적							
토지이용계획 (㎡)	용도별							
	면 적							
기반시설계획	시설별							
	개 요							

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귀하

수수료
없음

※ 구비서류

1.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(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)
2.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
3. 보상계획서(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)
4.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(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5.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(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6.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(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.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합니다.
7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
8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9.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
10.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
11. 환지계획서(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(뒤쪽으로 계속됩니다)

210㎜×297㎜(보존용지(2종)70g/㎡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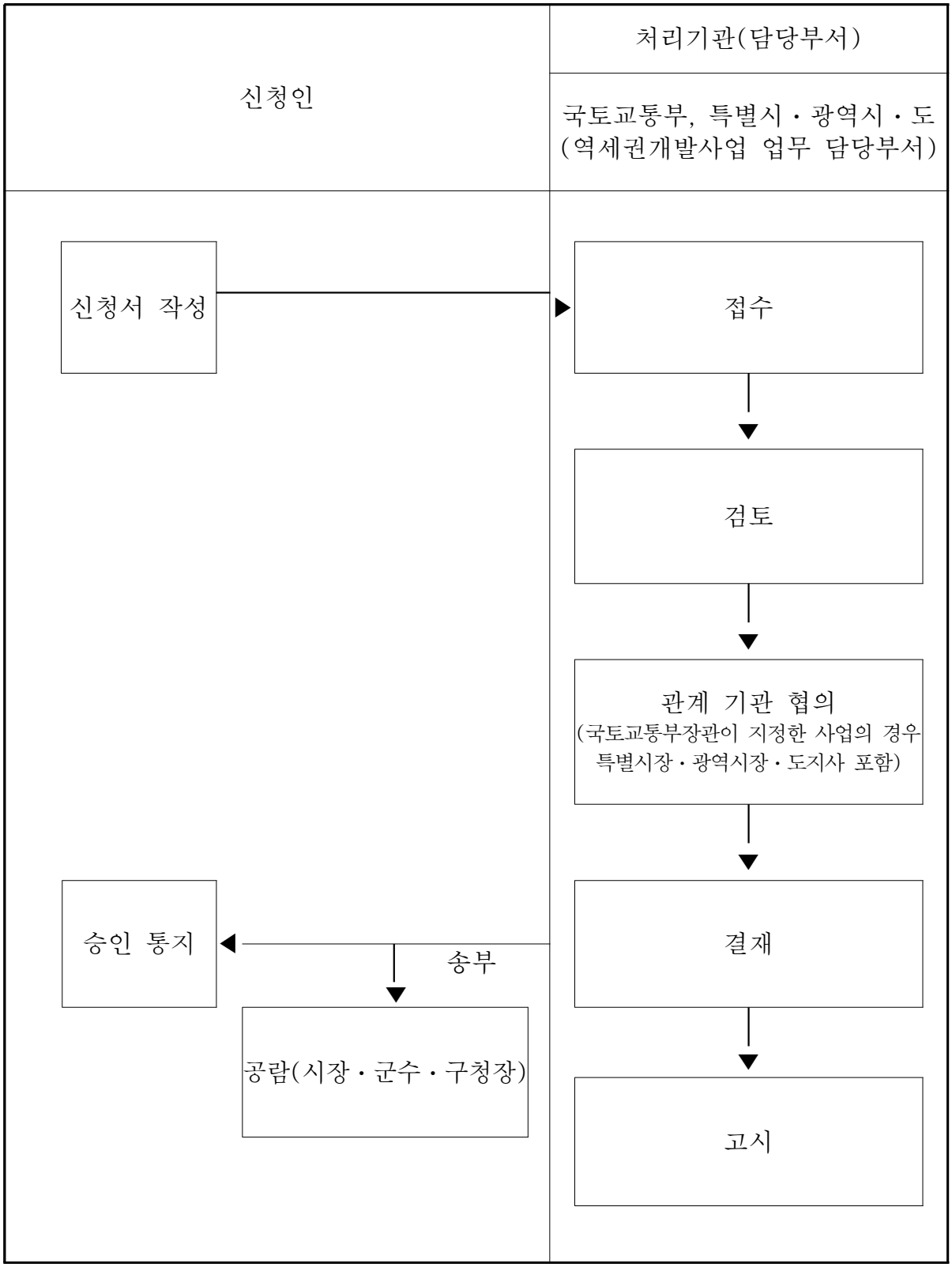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